202.54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뉴욕주 주지사는 모든 주 비상시 기관의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 또는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중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명령 202.36호 및 행정명령 202.37호가 연장된 바와 같이 및 행정명령 202.46호 및 202.47호로 발령된, 후속 지침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일시 중지 및 수정, 지침을 다음을 제외하고 2020년 8월 29일 토요일까지 30일간 더 연장합니다.

- 2020년 선거법(Election Law)에 따라 열리는 모든 정당 간부회의, 정당 회의, 정당 대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최대 10개의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가한 행정명령 202.47호에 포함된 지침은 본 지침의 발행 이전에 존재했으며 10개를 초과한 대리권을 부여했던 모든 정당 위원회 규칙이 완전히 유효하고 효과를 계속 발휘함을 제공하기 위해 이로써 개정됩니다.
- 7월 28일에 학교 예산 재투표를 시행하는 데 필요했던 제2022, 2007, 1608, 1716, 2018-a 및 2018-b항의 일시 중단은 더 이상 중단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925-a항에 의거하여 이자 또는 벌금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의 연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법의 제925-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해 나소 카운티 애틀랜틱 비치 빌리지의 기존 2020년 7월 1일 수요일이었던 이자 또는 벌금 없는 납부 기한을 소급 적용하여 21일간 연장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